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송재봉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91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6. 18.

발 의 자 : 송재봉 · 허성무 · 임호선
이원택 · 민병덕 · 문정복
이병진 · 진선미 · 강경숙
강득구 · 최혁진 · 권향엽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우리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나,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에 있어 솔선수범하여야 하는 공공부문의 탈북민 채용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.

현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탈북민 채용은 200명 안팎에 머물러 있고, 다수의 정부기관에서 탈북민을 전혀 채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. 이에 북한이탈주민 고용 노력을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기관으로 확대하고, 통일부 장관이 매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의 탈북민 채용현황을 조사하도록 하는 한편,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, 공공기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의2).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2의 제목 “(공공기관 평가 반영)”을 “(국가기관 등의 채용 및 평가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”을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북한이탈주민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북한이탈주민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,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통일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, 북한이탈주민 채용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1. 국회사무총장, 법원행정처장, 헌법재판소사무처장,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,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
2.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
3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교육감
4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8조의2(공공기관 평가 반영) ①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u><신 설></u>	제18조의2(국가기관 등의 채용 및 평가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---.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북한이탈주민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북한이탈주민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,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③ 통일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, 북한이탈주민 채용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 1. 국무총리실, 법원행정처장, 헌법재판소사무처장, 중앙선
<u><신 설></u>	

② · ③ (생략)	<u>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, 중앙 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</u> 2.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의 장 3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률」에 따른 교육감 4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④ · ⑤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	--